국립부산국악원 대관규정

제정 2009.4.8. 예규 제 8호
개정 2009.5.13. 예규 제 9호
개정 2009.12.15. 예규 제17호
개정 2011.1.18. 예규 제32호
개정 2012.12.12. 예규 제36호
개정 2014.3.31. 예규 제46호
개정 2018.1.16. 예규 제58호
개정 2018.5.16. 예규 제59호
개정 2020.12.21. 예규 제62호

제1조(대관의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산국악원(이하 "국악원"이라 한다)의 시설을 대관하여 전통국악의 공연이나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악원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민족예술의 진흥·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관의 시설) 대관할 수 있는 국악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대극장(연악당)

② 소극장(예지당)

제3조(대관의 범위) 국립부산국악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악원 자체의 공연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국악원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① 전통예술의 전승·발전과 국제문화예술교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②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③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④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또는 행사

제4조(대관의 신청)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연계획서 또는 행사계획서
2. 공연자 또는 행사주최자의 이력 및 경력
3. 출연자 명단
4. 인터넷 홍보에 대한 동의서

*(추가) 동의서

② 대관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대관공고 접수 마감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대관의 접수 및 승인) ①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접수된 대관신청서를 제3조 각 항에 의거하여 대관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대관신청서는 심의 후 대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의 일수의 기준 등) ①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는 경우에 그 대관 일수는 3일 이내로 하고 공연 또는 행사의 횟수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대관 신청된 일정이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공연 실적이 많은 신청자에게 우선 대관한다.
2. 단체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 실적이 많은 단체,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의 순서로 대관한다.
3. 단체와 개인 간에 신청 일정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단체에 우선 대관한다.

제5조의2(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대관 신청된 사항을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국악원에 대관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관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을 포함하여 특정 성별로만 위원회가 구성되는 경우 최소 1인 이상

은 다른 성별로 위촉하도록 한다.

③ 대관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하되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국악원 장악과에 재직 중인 사람

2.「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국악이나 전통예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전통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또는 국악원 예술감독

④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비상임 위원의 경우 사정상 출석이 불가한 경우 서면결의서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⑥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3(대관심의위원회의 회의록) ① 대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사항을 적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관을 신청한 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언제든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회의록 공개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시 원장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대관료의 산정) ① 대관료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 및 그 소속 기관이 주최하는 문화예술 공연 또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의2(대관료의 납부) ① 대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된 납부기한까지 대관료 전액을 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대관료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한다.

② 대관 변경에 따른 추가 대관료는 사용 전에 내야 한다. 다만 공연 또는 행사의 진행 중에 발생된 추가 대관료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내야 한다.

제6조의3(대관료의 반환) ① 대관료를 낸 자가 본인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8조제1항의 사유로 대관의 취소나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낸 대관료는 반환받을 수 없다.

② 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관을 신청한 자가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를 신청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관료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납부된 대관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제8조제2항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된 경우에는 납부된 대관료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 내용의 변경) ① 원장은 국악원의 업무 또는 국악연주단의 공연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대관 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 승인 통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원장의 승인을 받아 대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및 공연자와 공연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1. 대관일 및 대관시설
2.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

③ 대관일 및 대관시설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관 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대관 요청일이 대관 가능한 날일 때에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④ 공연 또는 행사의 시간, 무대 연습 및 장치일시를 변경하려는 자는 공연 또는 행사 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의 취소 등) ① 원장은 대관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해당 공연 또는 행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대관 신청을 할 때에 제시한 공연 또는 행사의 내용과 다르게 공연이나 행사를 한 경우
2. 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원장은 대관 예정인 국악원 시설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대관을 취소하고 대관자에게 대관취소 통지를 하고 이미 납부된 대관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취소를 신청한 경우

④ 대관공연 전 공연관련회의 불참 및 사전 준비자료가 미비한 경우

제9조(대관의 금지) ①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간 국악원 시설을 대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로 두 번 이상 대관취소를 통지받은 사실이 있는 자
2. 타인의 공연을 위하여 자기 명의로 대관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 자

제10조(기술요원의 보충 및 경비부담) 원장은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공연 시에 국악원 기술요원 외에 추가로 기술요원을 필요로 할 경우 그 공연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사람을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그 공연자가 부담하게 한다.

제10조의2(관람권의 검인) 대관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공연이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매표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관람권의 검인을 받고 공연당일 좌석의 배정과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배상) 국악원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시설의 사용 중 그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공연장 정기휴관) 국악원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정기휴관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1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